

### 옥산로개설의건에관한청원심사보고

#### 1. 심사경과

가. 청원인 성명 : 남두현 외 34

주소 :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125번지

나. 소개의원 : 윤건웅 의원

다. 접수일자 : 1996년 5월 22일

라. 회부일자 : 1996년 5월 22일

마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4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(1996. 6. 21) 상정  
제5차 도시건설위원회(1996. 6. 26) 의결

#### 2. 청원요지

- 옥산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 관련
  - 보상가를 현실에 맞게 제조정
  - 농지 대체 보상
  - 세입자의 적절한 이주대책 강구

#### 3. 취지설명요지(취지설명 : 윤건웅 의원)

옥산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행정 추진과 토지보상가의 제조정 요구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	의	답	변
○ 토지보상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은 필지수는?		○ 토지 평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개별 공시지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○ 총 106필지 중 원미구 역곡동 168-1번지 박 교식의 목장용지 1필지가 개별 공시지가보다	

질 의	답 변
<p>○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은?</p> <p>○ 옥산로와 인접한 학교부지에 대한 토지보상과의 형평성은?</p> <p>○ 옥산로 개설과 관련한 편입토지 평가법인은?</p>	<p>낮게 책정되었음</p> <p>○ 관계법에 의하여 이주택지, 이사비, 주거비, 주거대책비를 지급할 예정</p> <p>○ 학교부지는 교육청에서 주관한 토지 보상이며</p> <p>○ 옥산로 개설 관련 토지보상 평가는 관계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개 법인이 평가하여 그 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액을 산정한 것임</p> <p>○ 한국감정원, 태평양감정원 등 2개 법인임</p>

5. 심사결과

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

※ 붙임 : 옥산로개설의건에 관한 청원의건서 1부

옥산로개설의건에관한청원의건서

- 옥산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106필지 68,889㎡(20,840평), 지장물 158건에 대하여
-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별법,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한국감정원과 태평양감정원을 감정평가업자로 선정, 토지보상액을 산정하여 협의 매수를 추진하였다 하나
- 기대 이하의 토지보상액 책정 및 95년 타기관에서 추진한 옥산로개설 편입부지와 50m 인접한 학교부지 보상액과 현격한 차이로
- 동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관련 주민들이 토지보상액 산정에 의혹을 나타내고, 행정부의 무성의한 협의 자세로 인하여 협의가 지연되고 있음
-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로 토지보상가를 결정하였다 하나 주민의견 수렴 부족과 토지감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던 점을 감안하여

- 토지수용법 제25조, 동법 제25조의3 규정에 의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시
- 주민이 추천하는 1개 감정평가사업자를 토지감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보상에 대한 주민 의혹을 해소하고 옥산로 개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함.